

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나601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나6016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4. 29 선고 2015가단14766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E

변론 종결 2016. 12. 13

판결선 고 2017. 2. 7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4. 29. 선고 2015가단1476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B에게 3/14지분에 관하여, C, D에게 각 2/14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6. 8. 26. 접수 제169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B에게 3/70지분에 관하여, C, D에게 각 2/70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8. 26. 접수 제16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B에게 36/ 641지분에 관하여, C, D에게 각 24/641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 8. 26. 접수 제16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조 실 판사 김새미

별지